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4
----------	-----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4일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 홍성룡, 최웅식, 이병도,
김용석, 노식래, 정진철,
한기영, 김화숙, 김제리,
오중석, 임종국, 장상기,
김정환, 최기찬, 김경우,
김혜련, 이경선 의원(17명)

1. 제안이유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도모하고자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안 제5조제8호).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8.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국민건강증진법</u>」 제9조제4항 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u>전통시장</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제 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을 신설한바, 같은 조례안 제7조 (금연구역 표시)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6,9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6,960천원으로 연평균 7,392천원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비용	7,392	7,392	7,392	7,392	7,392	36,960
	소계(b)	7,392	7,392	7,392	7,392	7,392	36,960
총비용(b-a)		7,392	7,392	7,392	7,392	7,392	36,960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2018.10.30. 기준일 이후 서울시 전통시장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비용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전통시장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경우, 시장 1곳당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주출입구 2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이후 유지관리비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 추계방법

- 서울시 전통시장수 308곳을 기준(2018.10.30.), 시장 1곳당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주출입구 2곳씩 총 616곳에 설치

- 전통시장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과 산출단가는 「서울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해당 부서의 실제 예상 비용 준용하여 추계(표지설치방법은 표지판 설치, 산출단가는 60,000원/개당)
- 총 설치비용은 추계기간 중 연간 균등 분할 발생하는 방법으로 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비용 ≙ 36,960천원

- 설치비용 = (전통시장 금연구역 안내표지수 × 1곳당 설치단가(60,000원)) × 서울시 지원율(100%)
- 금연구역 안내표지수(616곳) = 전통시장수(308곳) × 2곳(시장1곳당)

(단위 : 곳, 천원)

유형별 구분		전통시장수	금연구역 안내표지수	설치단가	설치비용
전통시장	계	308	616	60	36,960
	등록시장	144	288	60	17,280
	인정시장	110	220	60	13,200
	상점가시장	54	108	60	6,480

주 : 1. 2018.10.30.기준일
 2. 전통시장중 무등록시장(44곳)은 제외
 자료 : 서울시 자료(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

- 설치단가(60,000원) = 전년도 산출단가(38,000원) × 인상률(157.8%)
-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은 2016년도 완료하여 2018년 설치비용 예산은 없음. 단, 기존 38,000원 산출단가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약하여 향후 설치시에는 60,000원 산출단가 예상됨(부서 의견 반영)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최경희

☎ 02-2180-7944

e-mail : hiru90@seoul.go.kr